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박춘희 의원)

의안 번호	202
----------	-----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22일

발 의 자 박춘희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평창군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상대상, 수상부문, 수상시기 및 상장 규정(안 제2조 ~ 제6조관련)
- 나. 추천 공고 및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안 제7조 ~ 제8조관련)
- 다. 청소년상 심사위원회관련(안 제9조 ~ 제11조관련)
- 라.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및 수상자 결정(안 제12조 ~ 제13조관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입법예고 : 2023. 10. 30. ~ 2023. 11. 19.(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3. 10. 19.~ 2023. 10. 27. 아래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검토안(인재육성과)	사유	의견
<p>제2조(수상 대상)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p>	<p><수정> 제2조(수상 대상)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u>9세 이상 24세 이하</u>의 청소년으로 한다.</p>	<p>「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조례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범위와 같게 운영하는 등 일관성 필요함.</p>	
<p>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모범선행 부문: 효를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거나 소외계층에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청소년</p> <p>2. 창의인재 부문: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청소년</p> <p>3. 학력향상 부문: 교과 성적 향상 및 경진대회 입상 등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장래가 촉망되</p>	<p><수정>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모범선행 부문: 효를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거나 소외계층에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청소년</p> <p>2. <u>창의인재 부문: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청소년</u></p> <p>3. 학력향상 부문: 교과 성적 향상 및 경진대회 입상 등 자기 주도적인 자</p>	<p>강원특별자치도에 서 청소년 대상으로 7개 분야에서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여하고 있으나 후보 추천 저조 등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 있고,</p> <p>‘평창군민대상’도 2023년 10월 조례 개정하여 2024년부터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 운영됨. 관내 청소년 인구 고령 및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가치 제고를 위해 수상 부문과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수용】</p>

<p>는 청소년</p> <p>4. 문화예술 부문: 문화·예술 분야의 뛰어난 재능으로 지역 사회의 예술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청소년</p> <p>5. 체육진흥 부문: 체육 분야의 기량이 뛰어나 체육진흥에 공헌할 것이 예상되는 잠재력이 큰 청소년</p> <p>6. 글로벌리더 부문: 통솔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세계화 의식 및 의사소통 능력 등 국제문화 이해의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p>	<p>세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p> <p><u>4. 문화체육 부문 :</u> <u>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u></p>		
---	--	--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대상)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선행 부문: 효를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거나 소외계층에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청소년
2. 창의인재 부문: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청소년
3. 학력향상 부문: 교과 성적 향상 및 경진대회 입상 등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4. 문화체육 부문: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평창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

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창권자) 청소년상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제5조(시상 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상장)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7조(추천 공고) 군수는 매년 청소년상 추천 요강을 평창 이야기,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
2. 수상 부문 관련 부서장 및 청소년 관할 읍·면장
3. 청소년 주소지 읍·면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청소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군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

5.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은 해당 연도의 청소년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

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후보자일 경우

③ 위원회 심의·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의 심사 시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자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 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박춘희의원
연락처	(033) 330 -2502